

1997년 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서

광 주 광 역 시 서 구

7.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상업광고의 수요증가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일제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함

□ 추진 방향

-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 조사
- 조사된 불법광고물을 단계적으로 정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 2,716건
 - 안내문 발송 : 2,716건
- 불법광고물 양성화
 - 기 간 : '98. 6월 ~ 9월 (4개월)
 - 대상 광고물 : 허가·신고없이 부착된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 방 법 : 과태료 면제 후 허가·신고 수리
 - 추 인 허 가 : 1,781건 (가로 684, 돌출 999, 지주 94, 옥상 4)
 - 수수료 수입 : 28,212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한정된 광고물관리팀 인원으로는 전수조사에 어려움이 많음
 - ⇒ 노선별로 중점정비구간을 지정하여 조사(공공근로자 활용)
-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시 광고주의 민원다발 우려
 - ⇒ 관계법령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후 추인 허가

□ 향후 계획

- 양성화 기간동안 추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게고장 발부 및 과태료 부과

8. 현수막 걸이대 설치

현수막 걸이대가 필요한 장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의 광고수요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자 함

□ 추진 방향

- 민자유치 설치로 예산 절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설치장소 : 상무신도심내
(중흥아파트앞, 체육공원앞, 시청부지앞)
- 수량(규격) : 3개 (L=8m, H=7m)
- 방 법 : 민자 유치 (시설물은 설치와 동시 기부채납)
- 설 치 자 : (주)대산광고 오 종 택
- 예산절감 : 12,000천원 (개소당 400만원)
※ 구예산으로 1개소 설치 (염주체육관앞)

□ 문제점 및 대책

- 금호, 풍암택지개발지구 등은 광고수요의 증가로 추가설치가 필요하나, 소요예산을 구자체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움
⇒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 모색

□ 향후 계획

- '99년도 추가설치 : 2개 (장소는 추후 선정)
- 규격(재질) : L=8m, H=7m (철구조물 및 스텐레스)
- 소요예산 : 6,000천원 (개소당 3,000천원)
- 예상수익 : 1,200천원 (개소당 600천원의 사용료 수입)

地 籍 課

보 고 순 서

1. 개별공시지가 조사	263
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264
3.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265
4.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266
5.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267
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68
7.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269
8. 지적도면전산화 사업 추진	270

1. 개별공시지가 조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각종 국세 및 지방세등의 과세자료로 제공

□ 추진 개요

- 추진방법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및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조사·산정
- 조사대상 : 37,099필 (표준지 : 1,055필 제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98. 1. 3 ~ 3. 21
- 산정지가검증 (50일간) : '98. 3. 17 ~ 5. 5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 5. 6 ~ 5. 25
- 의견제출 현황 : 207 (상향 : 10, 하향 : 197)
- 의견제출 처리 : 207 (상향 : 20, 하향 : 71, 기각 : 116)
- 결정·공시 : '98. 6. 30
- 이의신청 현황

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추진 개요

- 부과대상 조사
 - 기 간 : 연중 수시
 -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수반 개발사업등 10개 사업
 - 대상면적 : 660㎡이상 (도시계획구역내)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개발비용내력서 제출 : 사업준공일 (가사용 승인 포함)로부터 25일 이내
 - 부과·고지 : 부과종료 시점부터 3월 이내 (납기 6개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부 과 : 34건 / 6,361백만원 ('91년 ~ '98년)
- 징 수 : 19건 / 5,440백만원
- 미 징 수 : 15

3.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추진 개요

- 부과대상 : 7대도시 도시계획구역안의 개인 660㎡, 법인 1㎡이상
- 부과기준 : 매년 6월 1일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부과실적 : 542건 3,175백만원 ('92 ~ '98년)
- 징 수 : 505건 2,866백만원
- 미 징 수 : 37건 309백만원
 - 행정 소송 : 1건 24백만원 (서구 농성동 641-6 조태형)
 - 체 납 : 36건 285백만원 (압류 18건, 191백만원)

< '98년도 부과·징수실적 >

- 21건 95백만원 부과하여 11건 19백만원 징수

□ 문제점 및 대책

-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고액이므로 납부 기피
⇒ 자진납부 유도 및 체납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개인별로 납부 독려

□ 특 기 사 항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폐지 ('98. 9. 19)

- 부과기준일이 '98. 6. 1일인 '98년도 정기분 부담금과 부과기준일 '98. 1. 1일 이후인 '98년도 수시분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음

4.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 확립으로
지가 안정 및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 하고자 함

□ 추진 개요

- 토지거래 규제지역
 - 허가 : 쌍촌동·치평동·유촌동 및 전 녹지지역
 - 신고 : 허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 허가 및 신고대상 토지에 대한 심사 철저 (실수요성·이용목적)
- 사후관리 (토지거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
 - 이용실태 조사 : 취득후 1년 이내 목적대로 이용 및 개발여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 : 226건 / 57천㎡ (사후신고 포함)
- 토지거래 검인 : 5,734건 / 1,212천㎡
-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
 -

5.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

□ 추진 개요

- 대상 : 194개소 (공인중개사 71, 중개인 122, 분사무소 1)
- 지도·단속실시 : 년 2회이상 (정기, 수시단속)
- 중개업자 교육 : 년 7회 (일반교육 2, 연수교육 5)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도·단속 실시 - 5회
 - 단속업소수 : 118개소
 - 적발업소 조치 : 행정처분 53개소
 - 허가취소 10, 업무정지 29, 과태료부과징수 2, 시정 12
-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부동산중개업협회)
 - 일반교육 : 2회 100명 (중개업자 94명, 보조원 25명)
 - 연수교육 : 5회 88명 (중개업자 90명, 보조원 8명)

□ 문제점 및 대책

- 부동산 경기침체로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증가
 - ⇒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과 교육을 강화하여 중개업법 위반업소 사전예방

□ 향후 계획

-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중개업법 위반업소 사전예방

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불편해소

☐ 추진 개요

- 시행기간 : '95. 4. 1 ~ 2000. 3. 31 (5년)
- 총목표량 : 193필 ('97년말까지 실적 : 148건)
 - '98 목표량 : 45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접수 : 32 건
- 처리 : 23 건 (완료 14건, 처리중 9건)
- 홍보 : 서구소식 3회, 개별통지 1회 (329명)
- 방법 : 신청서 접수절차 준수 및 신속 처리

☐ 문제점 및 대책

- 공부상 지분면적과 점유면적 상이로 공유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기간이 7 ~ 14개월로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소유자 전원합의 및 동의신청을 유도하여 처리기간을 단축

☐ 향후 계획

- 본 특례법 시행 특혜사항 적극 홍보 대상자 전량 신청 유도

7.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토지이동정리(분할, 합병,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사항을 등기촉탁 함으로서 주민의 등기비용절감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로 민원불편 해소

☐ 추진 개요

- 기 간 : 연중실시
- 대 상 : 3,000필
 - '95. 4. 1 이전 토지이동지 및 '98 이동정리분 전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추진실적 : 2,004필
- '95. 4. 1 법개정 이전 이동정리분 지번별 조서에 의거 등기부 열람후 등기촉탁
- '98 토지이동 정리와 동시 전량 등기촉탁 병행 실시

☐ 문제점 및 대책

- '95. 4. 1 법 개정이전 이동토지 전량 등기부 열람
 - ⇒ 등기관서에 업무 협조요청과 지속적으로 등기부 열람 실시

☐ 향후 계획

- 주민의 등기비용 부담이 없도록 즉시 등기촉탁 (1건당 35,600원)
- 등기촉탁 지연시 등기소 출장 확인 촉구

8. 지적도면전산화 사업 추진

지적도면을 전산화함으로써 토지정책 수립등 신속 정확한 기본자료
제공과 지적행정의 과학화 도모

☐ 추진 개요

- 기 간 : '98 ~ 2000년말(3년간)
- 총업무량 : 668매 48,838필 (기타 장비구입 10종)
- '98 목표량 : 200매 (데이터구축 및 장비구입)
- '98 예산액 : 72,424천원 (국비 : 33,424천원 구비 : 39,000천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원시자료(도면, 대장) 정비
 - 도면, 대장 대사 : 10개동 (도면 410매, 대장 32,099필)
 - 오류발체 정비 : 695필
- 도면 데이터 구축 및 장비구입 실적 없음

☐ 문제점 및 대책

- 데이터 구축이 행정자치부 주관사업이므로 소관청 자체추진이 어려움
⇒ 국고 예산지원 및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적극적으로 추진

☐ 향후 계획

- 데이터 구축 및 장비구입 (행정자치부 지침 시달시)

〔第82回 定期會〕
〔'98. 11. 26~12. 2〕

行政事務監査資料

－ 企劃總務委員會 －

光州廣域市 西區

목 차

□ '9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
-------------------------	---

□ '98 행정사무감사 자료	23
-----------------------	----

○ 기 획 감 사 실	25
-------------------	----

○ 정 보 통 신 실	137
-------------------	-----

〈 총 무 국 〉

○ 총 무 과	153
---------------	-----

○ 지 방 세 과	183
-----------------	-----

○ 회 계 과	221
---------------	-----

○ 민 원 봉 사 과	237
-------------------	-----

〈 직 속 기 관 〉

○ 보 건 소	257
---------------	-----

'9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 42건

○ 기획감사실 (11건)	5
○ 정보통신실 (2건)	10
□ 총 무 국 (24건)	
○ 총 무 과 (12건)	11
○ 지 방 세 과 (5건)	15
○ 회 계 과 (4건)	18
○ 민원봉사과 (3건)	19
□ 직 속 기 관 (5건)	
○ 보 건 소 (5건)	21

※ 조직개편후의 직제에 따라 편제하였으며,
조직개편전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2건은 도시국 건설과로 이첩하였음

【기획감사실】

번호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1	시정	○ 이미지 통합사업(C·I·P)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97년도 편성된 예산을 '98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는 방안 강구 바람	○ 이미지 통합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주민정서의 통합과 지역이미지 개선에 따라 파급되는 효과가 지대한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추세로서 ○ 우리 구에서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불용 처분하는 것보다 지방조직의 변화양상이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98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음
2	시정	○ 투자분석심의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예산 편성전에 수립토록 하고, '98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어려운 경제속에 여러분야의 해외경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삭감 또는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우리구의 열악하고 한정된 재원을 유효 적절하게 배분·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획 재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어,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과 현안 사업

- 6 -

번호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3	시정	○ 행정자료실 운영의 체계와 도서 목록 정리 등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활용토록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격변하는 세계화시대의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배가시켜 주민본위의 참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자료실 확충(11평→24평), 도서 분류법에 의한 자료분류와 도서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신속·정확한 자료검색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 행정자료실의 활성화와 보유자료를 구산한 전직원 및 의회가 다같이 공유하기 위해 보유장서 현황을 실·과·소·동 및 의회에 통보하였고, 보유자료 목록을 책자화하여 배부하였음
4	시정	○ 지방채 현황을 보면 채무현황중 채무부담이 43억원으로 이중 하수도 사업비에 11억 원을 발행하는 것은 주민 부채가 많으므로 시비보조금을 받아 시행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 지방채 사업은 사업시행의 필요성, 주민 수혜도, 재원확보의 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진단 분석하여 지방채 차입을 최대한 지

번호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5	시정	○ 감사계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156건이나 되는데 이처럼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직원들의 직무연찬 부족과 무사안일한 자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동행정에 대한 '97년 감사실시 현황은 14개동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종합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였고, 구본청에 대한 상급기관(내무부, 광주광역시 등)에서 경상 경비 집행실태와 감사원 대행기획감사등을 실시하였음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감찰활동을 전개하겠으며 ○ 회계·경리분야 지적사례 중심의 실무교재를 편찬하여 '98년 2월중에 구청 전실과 실무자와 동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찬 교육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함
6	시정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15건이 패소하여 패소배상금이 3억1천2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건당 최소 2백만원이 소요되므로 연간 패소배상금과 소송비용 1억원의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확립키 위하여	

- 8 -

번호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7	시정	○ 제2단계 조직개편안은 충분히 검토하여 정·현원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특히 50여종의 세외수입금을 관리할 수 있는 세외수입계 신설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지방조직 개혁차원에서 정부에서 주관하는 조직개편을 '98. 9. 10 마무리하였음 ○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총괄관리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방세과의 수납계를 세외수입담당으로 명칭을 조정하였음
8	시정	○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차량 및 운전원 운영 개선대책, 국장실 관리 통합으로 인력감축, 과소동통폐합 추진사항 등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구정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	○ '98. 1. 1 보건소 정원의 재책정시 운전원 1명을 감축하였고, 3. 12 내구연한이 지난 구본청의 업무용 승용차량 2대를 매각 처분하였음 ○ 또한 9. 10 조직개편시 운전원 9명을 감축하였고, 국장실 관리통합과 과소동 통폐합을 전제로 인력을 감축 조정하였음
9	시정	○ 서구청의 각종시책은 1	

번호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운천저수지 또한 농지개량 조합 소유로 합의가 없으며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신중하지 못한 정책과 무원칙한 계획 때문에 1회성 홍보에 그쳤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업의 성격과 수익성,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추진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마을단위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설득 노력중에 있으며, ○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수시대화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10	시정	○ 구정발전담당관실은 연구용역의뢰, 구정시책,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등 타부서와 업무가 중복되므로 조직개편시 구정발전담당관실의 폐지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98. 9. 10 조직개편으로 구정발전담당관을 폐지하였음
11	시정	○ 전평제 유료낙시터, 서창동하 전통마을 조성, 주민휴식공간으로서의 운천저수지 조성 등의 연구용역의뢰 결과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정보통신실】

번호	구분	지 적 사 형	처 리 결 과
1	시정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서 보면 청사업대, 국·공유재산 매각, 탈루·은닉, 세원발굴 등은 본연의 업무이므로 지방재정법 제5조 특별회계 자금관리, 지방재정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15조 공기업법 제19조의 경영수익과 관련하여 기채발행등 공기업과 민·관 합작투자 등 동청사 신축복합상가건립, 자동차 번호판 제작, 택지개발 등을 검토하여 획기적인 경영수익사업을 거양토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재산과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일상행정을 생산공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을 최대화하는 것도 경영수입의 창출로 볼 수 있으므로 ○ 앞으로 행정경영화를 통하여 절감·감량과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부서별로 신규

【총 무 과】

번호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1	시정	○ '97.8.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지원자 또는 법무부 봉사 명령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므로 전문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근무토록하고 전문적인 민간 위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와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타 시·구 비교견학, 복지관련 기관·시설에 대한 설문작업 및 구정발전 자문 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또한 조례 제정 후 민간위탁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2	시정	○ 행정구역 조정의 일 환 인 과 소 동 통 · 폐 합 은 다 수 주민의 의견을 충분한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인구 5천명 미만인 양1동을 양2동과 통합추진중으로 ○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조사를 실시 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동사무소 소재지 선정에 관하여 의견이 상충되어 ○ '98. 10. 19 소재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소재

번호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4	시정	○ 정원 27명인 총무과의 현원이 28명으로 인원초과임에도 타기관인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1명을 지원근무하게 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이같은 공무원 관리는 위법이며 '97년 1년간의 인건비 전액을 추정 배상토록 하고 해임등 조치하기 바람.	○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과 소속 일용직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나, '98 정원외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금년에 감축계획이나 감축시 평통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5	시정	○ 국제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를 위해 2,3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나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집행되지 않은 예산으로 사고이월치 말고 불용처리토록 하기 바람.	○ 미집행 예산은 불용처리하였음.
6	시정	○ 세원발굴 및 재정확보 차원에서 동사무소의 세무직 공무원을 구청 지방세과에 전원 근무토록 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세무직 정원은 33명으로 현원 36명중 33명은 지방세과에 근무중에

번호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8	시정	○ 토요일 전일근무중 무단이석으로 민원업무처리 지연 및 불편 사항이 있는 바 전일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98. 1. 1부터 토요일전일근무제 실시를 민원창구(지방세과, 구민과 위생과, 지적과, 자원봉사센터, 동사무소)를 제외한 전 부서는 유보하였으며, ○ 민원창구 직원들의 교육 등을 통하여 토요일전일근무에 철저를 다하고 있음.
9	시정	○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은 서구생활협의회를 통해 자원봉사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바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98년도 생활체육교실은 '98.6월~ 11월동안 9종목 14개교실을 운영 하여 현재까지 23,295명(남 15,897 여 7,398)이 참여하는등 주민 건강증 진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시장배 생활체육축제에서 게이트볼(1위), 배드민턴(1위), 축구 (3위), 테니스(3위) 종목에서 괄목할 만한

- 14 -

번호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11	시정	○민방위교육은 주간교육보다 야간에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대원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책을 강구 바람.	○98년 민방위교육기간에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말반(토요일 오후)을 편성 추진결과 7회 1,362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99년 교육시에는 12회 운영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12	시정	○각급 유관기관 및 동에 비치되어 있는 민방위장비 관리사항을 확인하여 전시대비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각 직장 통 민방위대의 보유장비 현황으로는 민방위 장비 16종 367점 화생방장비 9종 7,432점을 동별·직장별 담당자를 지정 매주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지방세과】

번호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1	시정	○ 과세체납세 징수율이 높은 기관과 공무원은 충분한 포상을 하여 사기양양토록 하고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한 기관 및 공무원은 징계토록 하여 과세액 및 체납액 징수 확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97년도 추진실적 ◦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동 시상 - 전반기 : '97. 7. 1(3개동) - 하반기 : '97. 12. 1(3개동) ◦ 징수 포상금 지급 - 지급액 : 5,000천원 - 1년이하 : 징수액의 1% - 1년초과 : 징수액의 5% ○ 체납액 정리실태 점검 ◦ 점검기간 : '97. 11. 19~11. 29 ◦ 점검내용 : 체납액정리 분야 전반 ◦ 점검결과 : 우수동 시상 실시
2	시정	○ '97년도 과목별 입금액 현황을 보면 구금고 평잔액이 9	

번호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3	시정	○ 과목별 양도성예금, 신종환 매체 이자율이 '96년 11.26% 11.22%인데 '97년 이자율은 10.75%, 10.56%로 이자수익율이 낮아 유휴자금의 내역이 부실함. '98년도에는 평잔액을 극대화하고 유휴자금의 과목별 예치시 이자 수익율이 높은 예금을 선택하여 실현가능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기 바람	○ 구금고의 예치자금의 극대화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세입을 증대하여 실현되는 것으로써 대가성지급(공사비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금금 등 불요불급한 자금은 최대한 억제하여 배정하고 ○ 예치자금의 만기후 재예치 또는 신규예치시 금리동향을 분석,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치당일 단기시장성 금리상품중에서 고금리상품을 선정, 예치하고 있음
4	시정	○ 구금고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의 금리와 서구주민 관내 중소상인에 대한 신용대출실적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 내역 관내 복지	

번호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5	시정	○ 서구 농성2동에 소재한 농성광장내의 구정홍보판 사용료를 '97년 당초예산에 2,4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는데 이 금액은 가공세입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욱이 추가경정예산에 1,200만원을 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근거는 무엇인가? 상반기 남은 금액을 추징조치하고 계약을 위반한 광고에 대하여는 철거 조치 및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97. 6월에 사용료 징수대책을 수립 광고수주와 관계없이 '97. 7월부터 사용료를 납부토록 조치하여 1,200만원을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위 금액을 징수 조치 완료함(건축과)

【민원봉사과】

번호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1	시정	○ FAX민원발급 내용중 주민등록등본 1통에 600원으로서 10통 발급시 6,000원으로 민원인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각종 민원수수료 사항을 전 주민에게 홍보토록 할 것이며, 신세계백화점 현장민원봉사실 근무자의 구정홍보와 친절봉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 1면에 60원, 다만 주민등록표 관리 기관이 아닌 기관에 신청시 600원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 FAX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 안내판 게시로 지속적인 주민홍보 - 대상민원 및 발급비용 안내 ○ FAX민원 발급비용 - 발급수수료+증명비용+FAX료 (행정자치부 FAX민원발급 운영지침) ○ 친절봉사 교육 실시 및 방문지도 · 매월 정례조회시 정신교육 및 사회 저명인사를 수시 초빙하여 전직원 교육 실시중에 있으며 · 친절봉사 실천에 대한 전화, 설문 조사, 현장방문지도 등을 통하여 확인 제도중에 있음
2			

번호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3	시정	○매월 발행하는 서구소식지에 주민의 공감사항 현안사항 등을 게재하고, 다수 주민이 구독할 수 있도록 배부하는 방법의 개선과 아울러 소식지의 광고수주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자율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바람	○서구새소식지에 구정소식, 생활정보 게재는 물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구청의 해결방안을 제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고 ○세대수에 비해 부수는 적지만(3.9세대당 1부) 은행·약국 등 다중집합 장소에 비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효율적인 배포를 위해 수시 확인·점검을 통해 사장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많은 주민이 구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광고수주는 본인의 자율의사에 따라 참여하고 있어 아직까지 강요에 의한 광고는 한건도 없으며 특히 IMF 한파로 모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광고수주 확충은 가능한 억제하여 광고가 없을 때에는 일반 구정광고로 대체해 나가겠음

【보 건 소】

번호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1	시정	○ 보건소 응급차량(앰블런스)의 노후로 응급치료 환자에게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내구연한에 관계치 말고 최신설비 차량으로 교체하여 응급환자 수송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바람	○ '98. 9. 12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운전원이 감소되어(1명) 응급차량 2대 운영이 불가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1대 불용처분 의뢰하였음
2	시정	○ 한방진료실 인원 부족으로 진료기간이 길어짐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진료실 인원보강 및 의료서비스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97. 9. 2일자 한방진료실을 개설 운영하여 개설당시에는 환자 이용율이 높음에 따라 장소협소로 진료능력에 한계가 있었으나 '98. 3. 2일자로 남구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로 인하여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없이 환자진료에 임하고 있으며, '99년도에 종합적으로 환자이용 추이를 감안하여 검토하겠음
3	시정		

번호	구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 초음파진단기 및 엑스선자동현상기 새로 구입 양질의 진료제공
5	시정	○ 보건소에서 하계방역을 실시 하고 있으나 운천저수지 주변 이 모기 등의 서식처로 전염 병 발생 우려 및 민원이 야기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 책을 강구하기 바람	○ 하절기 방역소독 ○ 기 간 : '98. 4. 20~10. 31 ○ 인 원 : 32명 ○ 소독대상면적 : 1,747km ² ○ 운천저수지 주변 방역소독 ○ 특별 방역소독 - 일 시 : '98. 7. 10 - 소독인원 : 11명 - 장 비 : 차량 2대 · 과량 : 2대(환경보호과 산림해충 방제차량 1대, 보건소 1대) · 소독장비 : 5대(분무기 3대, 연막기 2대) - 소독면적 : 1.1km ² - 방 법 : 잔류분무 및 연막소독 ○ 집중방역소독 ○ 소독실시(주3회 이상) - 보건소 주3회 - 동 주2회 ○ 소독실시 92회 ○ 방 법 : 잔류분

'98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 110건

○ 기획감사실 (21건) 25

○ 정보통신실 (8건) 137

□ 총 무 국 (62건)

○ 총 무 과 (23건) 153

○ 지 방 세 과 (15건) 183

○ 회 계 과 (9건) 221

○ 민원봉사과 (15건) 237

□ 직 속 기 관 (19건)

○ 보 건 소 (19건) 257

企 劃 監 査 室

목 차

1. 실·과·소·동별 정원 현황	29
2. 구정 소개 현황	31
3. 각종 행정규제정비 계획(실적) 현황	32
4. 구청장 공약사업관리 및 추진사항	43
5. 발간실 운영(간행물 발간현황)	76
6. 구정 시책·사업 심사평가	77
7. 목표관리제 시범운영사항	79
8.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82
9. 예비비 사용승인내역	84
10. '98년도 예산전용내역	85
11. 채무현황 및 내역	86
12. 목별 POOL예산 배정 및 지출내역	87
13.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결과 및 조치내역	88
14. 부당이득금 반환	

1. 실·과·소·동별 정원 현황

부서별	합계	정무	일 반 직								별정	기능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586	1	445	1	5	32	71	153	111	72	28	112
□ 구 본 청	352	1	274	1	3	15	62	106	58	29	9	68
기획감사실	20		19			1						

- 30 -

동 별	합 계	정무	일 반 직								별정	기능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소 계	162		119			13		32	36	38	17	26
양 1.2동	12		9			1		3	2	3	1	2
양 3 동	9		5			1		2	1	1	2	2
농성1동												

2. 구정소개 현황

연 번	책 자 명	주 요 내 용	유 형 (분량)	발간 부수	배 부 처
1	신 년 사 (’98. 1. 1)	○’98년도 구정 추진방향 ○주요시책사업 설명	책자형 (10쪽)	500	○실·과·소·동 업무 참고자료 ○통장 등 관내 인사에게 배부
2	’98. 구정안내 (’98. 4)	○구정 일반현황 ○주요시책 추진사항 ○장기발전계획	책자형 (29쪽)	500	○실·과·소 배부, 주민 홍보 : 256부 ○민원실 비치 : 110부 ○내방객 제공용 : 134부
3	민선자치3년 우리는 이렇게 일했습니다. (’98. 6)	○구정 일반현황 ○주요시책 추진현황 ○구단위사업 및 관내 시단위사업 ○서구 장기발전 전망	책자형 (116쪽)	600	○실·과·소 배부 : 82부 ○주민홍보 : 300부 ○의회사무국 : 20부 ○동사무소

- 32

3. 각종 행정규제정비 계획(실적) 현황

□ 규제정비계획(실적) 총괄

구 분	규제총수	'98 정비 계획(실적)			'99이후 정비	존치 (보류)	정비율
		소계	폐지	개선			
총 계	61	37	8	5	24	24	60.6%
법령에근거없는 규제정비계획	7	5	5			2	71.4%
법령에근거있는 규제정비계획							

연번	규제사무명 및 규제내용	근거규정	정비계획			사유	추진일정 (추진부서)
			폐지	완화	존치		
3	· 잡종재산의 대부 -잡종재산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는 구비서류가 아니므로 감축 조치	‘98 상반기 (회계과)
4	·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정관청(시·군·구청)에 등록	“	○			1차 신청시 대지, 건물에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토록한 것은 법령에 그 근거가 없으며 적격자에 대한 2차 서류이므로 1차 신청시 구비서류	

- 42 -

연번	규제사무명 및 규제내용	근거 규정	정비계획			사유	추진일정 (추진부서)
			폐지	완화	존치		
53	· 서구부동산중개업 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규칙	·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제23조 · 규칙 제2조, 제3조			○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육성 및 규율 을 위하여 필요한 규 제로 존치가 타당함	(지적과)
54	· 서구국민건강증진 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 · 동법시행령 제33조 · 조례 제2조, 제3조			○	국민건강증진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는 필요한 최소한의 법 위반자에 대한	

4.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 및 추진사항

I. 일반행정분야 : 3개시책 21개 사업(예산 5, 비예산 16)

I-1. 참봉사 행정, 투명행정 실천

(단위 : 백만원)

코 드 번 호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추 진 사 항	처리부서
I-1-1	주민 참정 제도 도입	○ 추진과정의 공청회, 설명회 개최로 주민의견 수렴 기회 마련	○ 양1, 2동 통합 실태조사 ○ 주민설명회 : 2회 -양1동 : '98. 7. 28 -양2동 : '98. 8. 5 ○ 주민설문조사 -기간 : '98. 8. 21~8. 25 -대상: 양1,2동주민 (3,067세대) -내용: 통합동의명칭 및소재지선정 ○ 매년 주요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	

